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213호
- 발의자 : 전병주 의원 등 23명
- 발의일자 : 2025. 10. 20.
- 회부일자 : 2025. 10. 23.

###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공포 · 시행(2025.5.1. 공포 · 시행) 등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에서 “시립학교”를 “공립학교”로 표기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춰 “전대”를 “사용 · 수익”으로 하여 상위 법령과 용어가 일치되도록 함.

### III.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립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2. “전대”를 “사용 · 수익”으로 수정함(안 제10조제1항제10호, 안 제14조 등).
3. 조례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오기(誤記)된 내용을 수정함(안 서식 1).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2025. 10. 28. ~ 11. 1.) 결과 :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전병주 의원 등 23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3213호로 공동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조례 제명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로 표현함에 따라 이를 개별 조문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전대”를 “사용·수익”으로 수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1) 정의에 관한 검토(안 제2조제1호)

- 현행 조례 제2조제1호는 “학교시설”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립학교의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된 사항과 연계해 조문의 “서울특별시립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하여<sup>1)</sup>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1)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공포(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173호, 2025.5.15.)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sup>2)</sup>

- 해당 일괄개정조례는 시민이 조례의 소관 기관과 적용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가<sup>3)</sup> 아닌 이상 조례 제명에 기관명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표기하고자 빌의되었고, 공포·시행을 통해 현행 조례를 포함한 23개의 조례 제명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문은 제명 개정과 연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성 있게 수정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2) 사용 허가의 취소, 전대로 보는 행위 등에 관한 검토(안 제10조제1항 제10호, 안 제14조)

○ 안 제10조제1항제10호와 안 제14조는 사용허가 취소 사유 중 하나인 “전대로 보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용어상 표현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행위를 공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분 분류하고, 두 개념을 정의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2)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6조(「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3) 학생인권조례 '관련 조례 2건('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조례 13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조례 3건 등 18건의 조례를 의미함.  
해당 조례는 조례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교육감의 관장사무나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규정하여 집행 기관 명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로 규정함이 바람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법적 정합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음.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2025.4.29.)를 참조)

- 덧붙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은<sup>4)</sup>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제3자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행위를 “다른 자가 사용 · 수익하다”로 규정합니다.

### [표-1] 공유재산의 제3자 활용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주요 조문

관련 조항	조문 내용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u>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u>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u>해당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u> 을 말한다.
제20조 (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u>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 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u>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한 경우</u>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u>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u>
제29조 (계약의 방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u>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 따라서 두 조문은 지방자치단체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이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해당 조문은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가 사용하는 표현 등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3) 서식에 관한 검토(안 [서식 1])

- 계속해서 안 [서식 1]은 “시 설명”을 “시설명”으로 하여 오기(誤記)된 부분을 수정함과 동시에 같은 서식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로 하여 조례 제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동 조문은 서식에서 확인되는 오타를 정정하고, 조례 제명 개정이 반영되지 못한 서식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바, 이는 입법과정 등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조례 내용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이 교육청 소관 조례에서 “시립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로 표기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sup>5)</sup>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	----------------	-------	----------------

5)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

# 관 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產)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 현금
  - 유가증권
  -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